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100
----------	------

제출연월일: 2017. 4.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구민의 보건환경 위생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규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목적, 설치 및 명칭, 정의(안 제1조 ~ 제3조)
- 나. 운영, 시설의 개방 및 제한(안 제4조 ~ 안 제6조)
- 다. 입장 거절 및 퇴장과 이용료(안 제7조 ~ 안 제8조)
- 라. 위탁과 수탁 등(안 제9조 ~ 안 제14조)
- 마. 지도감독 및 변상책임(안 제15조 ~ 안 제16조)
- 바. 안전관리,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17조 ~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 1)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2017년 예산에 36,000천원 반영되었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7. 3. 9. ~ 2017. 3. 29.)
- 2) 규제심사: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3)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복합청사 등에 설치하는 구립 목욕시설을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고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욕탕”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 목욕시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목욕탕을 이용하는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6. “경로우대자”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7.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8.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9.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10. “자원봉사자”란 타인의 목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욕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미취학 아동”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12.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① 목욕탕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 ②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선정한다.
-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수탁자가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목욕탕 개방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주 요일을 지정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목욕탕의 개방을 제한해야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매월 정기적인 휴무일
2. 시설의 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의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목욕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이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목욕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 대상 사무 및 내용
4.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목욕시설에 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목욕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기간 3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

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수립) 수탁자는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목욕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이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계약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안전관리)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이용료(제8조 제1항 관련)

구 분	사 용 대 상	이용료	비고
성동구 주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일 반 인	4,000원	
	장 애 인	2,000원	
	경 로 우 대 자	2,000원	
	수 급 자	2,000원	
	국 가 유 공 자	2,000원	
	한 부 모 가 족	2,000원	
	미 취 학 아 동	2,000원	
	자 원 봉 사 자	무료	
	정 기 목 욕 권	30,000원	1개월
다른 지역 주민	위 사용료에 +1,000원		
	정 기 목 욕 권	35,000원	1개월

※ 대상별 확인서류 소지시에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목욕시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재계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간		당초	-	연장	-
사유					
시설명					
<p>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목욕시설의 위탁관리·운영기간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9조제4항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각 1통				수수료
	2.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목욕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근동 작은 목욕탕 운영 인력 및 공공운영비 등의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직영운영 기준으로 비용추계
(운영인력 4명, 주 4일 운영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공공운영비		50	60	60	60	60	290
	인건비		40	48	48	48	48	232
	기타수선유지비		3	3	6	6	6	24
세입	목욕탕 이용료 수입		26	26	26	26	26	130

※ 비용추계 시 산정 금액은 실제 채용 직원의 급여수준, 공공운영비 규모 등으로 변경여지 있음.

4. 재원조달 방안: 구비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5항(운영)

5. 작성자: 성동구 자치행정과 박 성 춘 (연락처 02-2286-5138)

< 관 계 법 규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2015.6.22.>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2015.6.22.>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5.6.22., 2015.12.2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2015.12.29.>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탁 사실을 성동구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계약)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적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의견 제출자: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회장 이근진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제8조(이용료), [별표1] ○ 의견내용: [별표1]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이용료의 장애인 단체에 대한 감면비율 상향과 장애인 단체 구체적인 범위 명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 할인을 중복 적용 하는 경우 할인대상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최소한의 사용료로 충당되는 운영비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 단체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중복 혜택 부분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반영

<관련 조항>

제8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이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1]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이용료(제8조 제1항 관련)

구 분	사 용 대 상	이 용 료	비 고
성동구 주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일 반 인	4,000원	
	장 애 인	2,000원	
	경 로 우 대 자	2,000원	
	수 급 자	2,000원	
	국 가 유 공 자	2,000원	
	한 부 모 가 족	2,000원	
	미 취 학 아 동	2,000원	
	자 원 봉 사 자	무료	
	정 기 목 욕 권	30,000원	1개월
다른 지역 주민	위 사용료에 +1,000원		
	정 기 목 욕 권	35,000원	1개월

※ 대상별 확인서류 소지시에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7. 4. 28.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7. 4. 10.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7. 4. 11.

다. 상정일자: 2017. 4. 20.

(제23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행정관리국장

나. 제안이유

구민의 보건환경 위생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규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설치 및 명칭, 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운영, 시설의 개방 및 제한(안 제4조 ~ 안 제6조)

- 다. 입장 거절 및 퇴장과 이용료(안 제7조 ~ 안 제8조)
- 라. 위탁과 수탁 등(안 제9조 ~ 안 제14조)
- 마. 지도감독 및 변상책임(안 제15조 ~ 안 제16조)
- 바. 안전관리,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17조 ~ 안 제1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 1)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나. 예산조치: 2017년 예산에 36,000천원 반영되었음
-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7. 3. 9. ~ 2017. 3. 29.)
 - 2) 규제심사: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3)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제정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구립 목욕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설의 명칭, 운영 방법, 이용료, 안전관리 등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임

-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직영으로 운영 시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투입예산 대비 연간 8천여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장기간 사용하게 될 시설물임을 고려, 감가상각에 따른 비용과 수익 분석으로 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이용 증가에 대비한 각종 안전사고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